

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8.10. 2.(화) 14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
허 욱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표철수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5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보고

- 제51차 서면회의 결과, <의결안건>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- 제51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7] 의결사항

가.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(안)에 관한 건 (2018-53-461)

- ‘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(안)에 관한 건’에 대해 이헌 혁신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중앙전파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위탁 해지 및 방송통신사무소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됨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서 회수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를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내부위임하는 규정 제정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함

<내부위임 업무범위>

주요 위임사무명	관련 법령
○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	○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제4항 및 시행령 제57조제7항 ○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1호
○ 방송내용의 기록·보존에 관한 사항	○ 방송법 제83조제1항 ○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
○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	○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3호
○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, 재허가 및 변경허가	○ 전파법 제78조제3항 ○ 전파법 제34조제1항 ○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6항제1호
○ 지상파방송국의 개설허가 취소,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,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	○ 전파법 제72조 ○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6항제4호
○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에 대한 청문	○ 전파법 제34조제1항 ○ 전파법 제77조제3호 ○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6항제5호
○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(방송국 관련)에 관한 사항	○ 전파법 제90조, 제91조, 제92조 ○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6항제6호
○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위반 여부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한	○ 정보통신망법 제22조부터 제32조 ○ 정보통신망법 제64조1항및3항 ○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2항
○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	○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1항 ○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 ○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3항1호
○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	○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1항 ○ 정보통신망법 제76조 ○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3항2호

나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(2018-53-462)

- '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'에 대해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,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(주)딜라이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법인 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사전동의 요청에 대해 조건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8] 보고사항

가. 본인확인기관(신용카드사)의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

- '본인확인기관(신용카드사)의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'에 대해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,
 - 지난 9월 28일까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, 농협은행(NH농협카드) 1개사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하여,
 - 해당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, 기술·재정능력 등에 대한 심사계획을 진행하기로 원안대로 접수함

9]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10월 12일(금)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4:55)